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이경민
전화 031-880-4306

보도자료

2024. 9. 4.(수)

제목

사회복지법인 명의를 빌려 수익계약하여 지자체 등에서 357억원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9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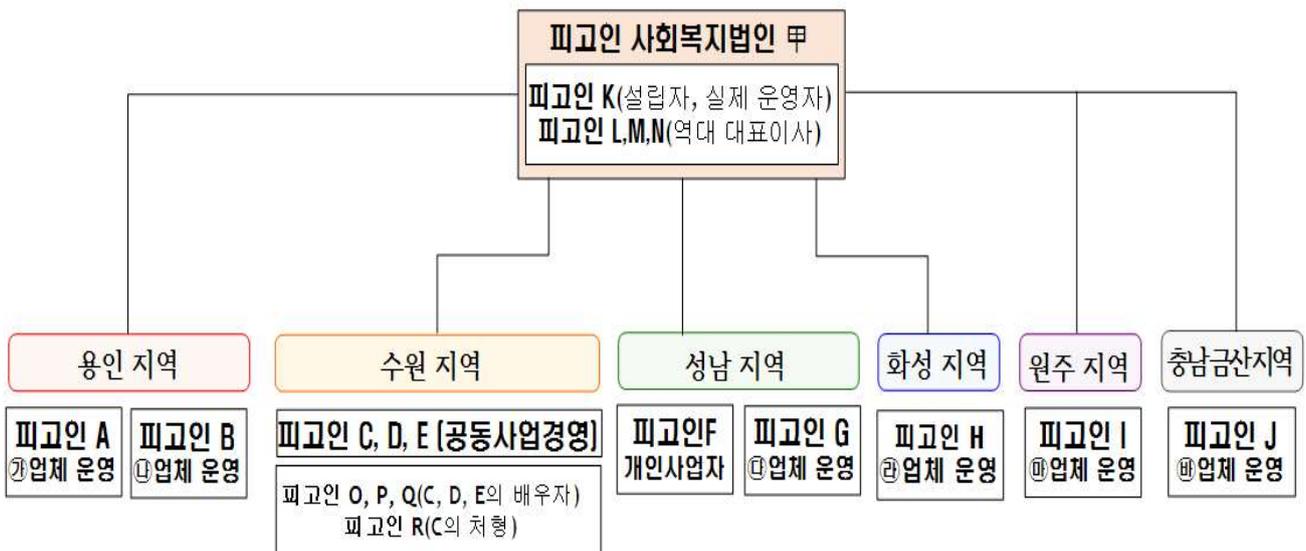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(지청장 김용자)은,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익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, 영리업체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,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등 이른바 '사회복지법인 명의대여' 사건을 수사한 결과,
 - '18.~'23. 수익계약 체결 자격이 없는 8개의 영리업체가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16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금 합계 35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여 업체 운영자 등 1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 등으로 입건하고,
 - 일부 업체 운영자가 가족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실업급여까지 부정 수령한 사실도 밝혀 업체 운영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(횡령) 등으로, 부정수급자 4명 등을 고용보험법위반 등으로 입건하여, 오늘(9. 4.) 총 19명(법인 포함)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검찰은 저소득층 아동·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, 사회복지법인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I 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 요지

1. 피고인(총 19명)

피고인	지위	처분
A~J	영리업체(청소, 경비업 등)의 운영자	불구속 구공판
K, L, M, N	사회복지법인 甲의 설립자이자 실제 운영자(K) 사회복지법인 甲의 역대 대표이사(L → M → N)	
O, P, Q, R	영리업체 운영자(C, D, E)의 가족	
甲	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	



※ '24. 2.경 여주지청에서,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甲을 운영하며 법인 자금 7억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설립자 K를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직접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

- 甲 법인의 지부(支部)로 등기된 장소에 영리업체 사무실만 존재하는 등 甲 법인 명의로 지자체 등과 체결한 계약상의 용역업무를 甲 법인이 아닌 영리업체가 수행한 정황을 확인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본건을 적발함

2. 주요 공소사실 요지

가. 피고인 A~J(영리업체 운영자), K~N(사회복지법인 甲의 실제운영자, 대표이사)

- '18.~'23.경 사실은 A~J 운영의 영리업체가 용역을 수행함에도 사회복지법인 甲이 '직접 용역을 수행'할 것처럼 甲 법인 명의로 지자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고, 위계로써 계약담당자들의 공무·업무를 방해 [특정 경제범죄법(사기), 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]

나. 피고인 O~R(영리업체 운영자의 가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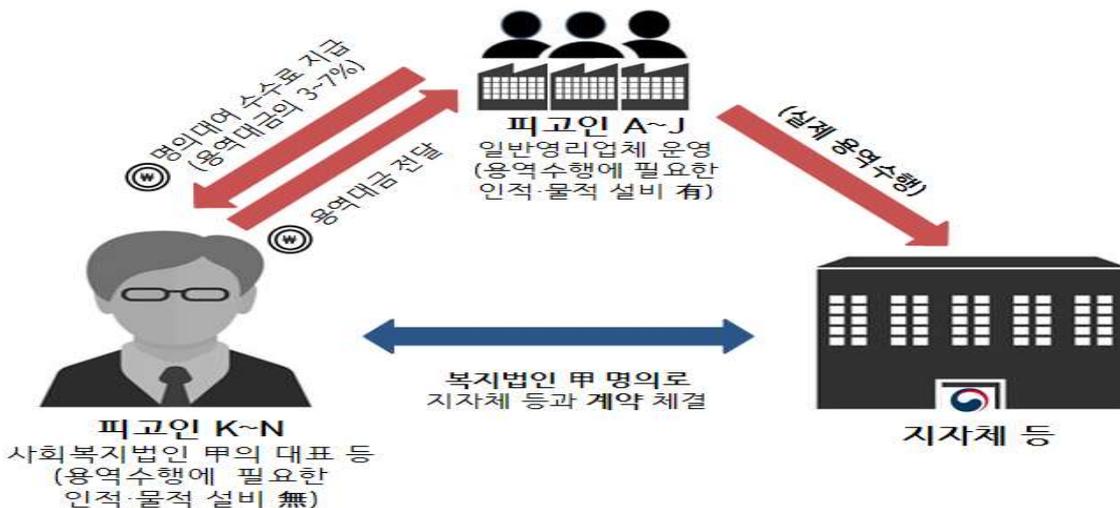
- '20.~'24.경 사실은 C, D, E 운영의 영리업체에서 근무한 바 없음에도 근무하다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[사기, 고용보험법위반]

다.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甲

- '18.~'21.경 甲의 업무에 관하여 甲의 대표인 K, L, M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甲 명의로 '직접 생산(용역수행) 확인증명서'를 발급받았음에도 지자체 등과 계약 체결 후 직접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영리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토록 함 [판로지원법위반] ※양벌규정

※ 명의대여 범행 구조는 [별지1] '명의대여 범행 수법 및 구조',

피고인별 구체적인 범행 규모 등은 [별지2] '피고인별 공소사실' 참조



※ 한편,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명의대여 수수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관을 가장하고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·수취한 정황을 확인해 세무서에 고발의뢰하였음

II

수사 경과

- '24. 2. 27. 甲법인, K*, L, M 외 1명(총 5명) 기소 *구속
- '24. 3. K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 등 인지, 甲 본사 등 6곳 압수수색
- '24. 4. 30. A~J 등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 등 인지
- '24. 5.~7. H·J 주거지 등 추가 압수수색, 세무서 고발의뢰
- '24. 8. 28. L~N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 등, K·甲 판로지원법위반 인지
- '24. 9. 4. 피고인들 19명 각 불구속 기소

I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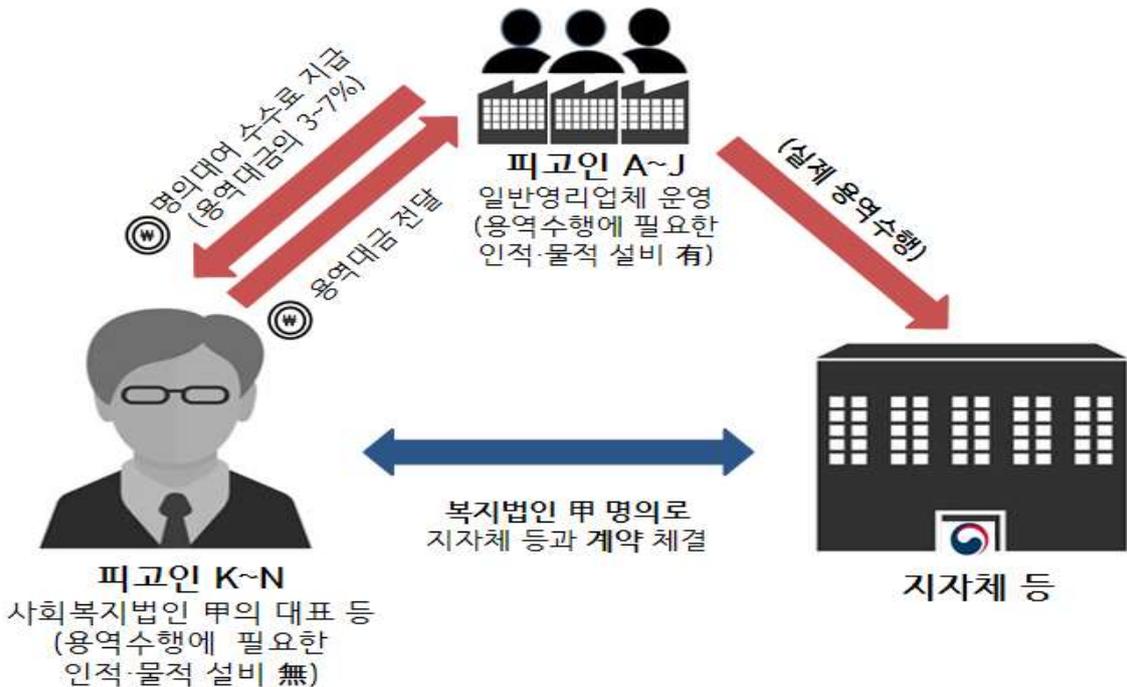
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,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구조적 경제비리를 적발·엄단
 - 일반 영리업체가 명의대여의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가장하여 수년 동안 손쉽게 계약을 수주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수의계약 제도를 私益 추구의 도구로 악용한 구조적인 범행을 적발
 - 저소득층 아동·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,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제사범을 엄단
- 사회복지법인의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지속적인 점검·감독 필요성 확인
 - 이 사건은 수의계약제도 및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지자체·공공기관·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제도운영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요청하였음
- 여주지청은 향후에도 사회복지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,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재정·경제 분야 비리 등에 관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수사할 예정임 

[별지1]

'명의대여' 범행 수법 및 구조

- 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기관, 공기업·준정부기관(이하 '지자체 등')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이나, 예외적으로 수의계약, 제한경쟁, 지명경쟁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
 - 그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, 해당 법인이 '직접 생산'하는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, '직접 수행'하는 용역계약, 사회복지법인에 '직접 매각 또는 임대'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
- ▲ 따라서 지자체 등의 계약체결 담당자는,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여부를 확인하고, ②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'직접생산 확인증명서'를 토대로 해당 법인이 용역을 '직접 수행'하는지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게 됨



※ 판로지원법에 의하면, 지자체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방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,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'직접생산확인증명서'가 있는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됨

▲ 피고인들은,

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경쟁 없이 손쉽게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, ② 지자체 등이 '직접생산 확인증명서'만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, ③ 중소기업중앙회에서 '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', '경계서비스'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없이 허가신고증,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심사만으로 '직접생산 확인증명서'를 발급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,

- 사회복지법인 甲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설비가 없음에도, 甲 법인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, 영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임에도 甲 법인이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지자체 등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甲 법인 명의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,
- 실제로는 영리업체가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, 지자체 등이 甲 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금은 영리업체에게 최종 귀속되며, 甲 법인은 명의대여 수수료(통상 용역대금의 3~7%)만 취득하는 '명의대여 사업'을 수년간 지속해옴

[별지2]

[피고인별 공소사실]

순번	피고인	신분	죄명	공소사실 요지
1	A (남, 58세)	청소업자 (㉑업체 운영)	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	- '18. 12.~'23. 12. K~N과 공모하여 복지법인 甲 명의로 수의계약 10건 체결하여 25억 5,100만 편취
2	B (남, 53세)	청소업자 (㉒업체 운영)	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	- '18. 12.~'23. 12. K~N과 공모하여 복지법인 甲 명의로 수의계약 5건 체결하여 16억 300만 편취
3	C (남, 53세)	공동사업경영	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, 업무상횡령, 고용보험법위반	- '17. 12.~'22. 12. K~N과 공모하여 복지법인 甲 명의로 수의계약 56건 체결하여 128억 6,900만 편취
4	D (남, 56세)			- '19. 1.~'24. 3. 복지법인 甲 지부 자금 3억 6,900만 횡령
5	E (남, 61세)			- '21.~'24. O, P, Q, R과 각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
6	F (남, 60세)	청소업자 (개인사업자)	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,	- '19. 12.~'22. 12. K~N과 공모하여 복지법인 甲 명의로 수의계약 11건 체결하여 32억 6,800만 편취
7	G (남, 53세)	청소업자 (㉓업체 운영)	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,	- '20. 12.~'23. 12. K, M, N과 공모하여 복지법인 甲 명의로 수의계약 3건 체결하여 9억 4,600만 편취
8	H (남, 52세)	청소업자 (㉔업체 운영)	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, 특정경제범죄법 위반(횡령), 업무상배임	- '18. 12.~'23. 12. K~N과 공모하여 복지법인 甲 명의로 수의계약 22건 체결하여 91억 7,500만 편취 - '19. 10.~'24. 1. 복지법인 甲 지부 자금 6억 4,500만 횡령, 300만 배임
9	I (남, 51세)	청소업자 (㉕업체 운영)	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	- '20. 3.~'23. 12. K~N과 공모하여 복지법인 甲 명의로 수의계약 6건 체결하여 6억 6,100만 편취
10	J (남, 68세)	불용품 판매업자 (㉖업체 운영)	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사기, 업무방해	- '21. 4.~'24. 1. K~N과 공모하여 복지법인 甲 명의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해 5건 계약체결하여 46억 5,500만 편취
11	K (남, 68세)	甲의 설립자 ·실제운영자	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,	- '18.~'24. L, M, N 및 A~J 등과 공모하여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 받고, 복지법인 甲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57억 3,100만 편취

순번	피고인	신분	죄명	공소사실 요지
			판로지원법위반	- '18. 10.~'21. 12. 복지법인 甲 명의로 '직접생산(용역수행)확인증명서'를 발급받아 지자체 등과 계약체결 후 영리업체에서 용역수행하게 함
12	L (남, 61세)	甲의 대표이사	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, 판로지원법위반	- '18.~'24. K 및 A~F, H~J 등과 공모하여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받고, 복지법인 甲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154억 4,600만 편취 - '18. 10.~'20. 1. 복지법인 甲 명의로 '직접생산(용역수행)확인증명서'를 발급받아 지자체 등과 계약체결 후 영리업체에서 용역수행하게 함
13	M (남, 59세)	甲의 대표이사	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, 판로지원법위반	- '18.~'24. K 및 A~J 등과 공모하여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받고, 복지법인 甲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145억 2,200만 편취 - '20. 2.~'21. 12. 복지법인 甲 명의로 '직접생산(용역수행)확인증명서'를 발급받아 지자체 등과 계약체결 후 영리업체에서 용역수행하게 함
14	N (남, 47세)	甲의 대표이사	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사기, 위계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	- '18.~'24. K 및 A~J 등과 공모하여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받고, 복지법인 甲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46억 9,500만 편취
15	O (여, 54세)	C의 배우자	사기, 고용보험법위반	- '21. 6.~'12. C와 공모하여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 후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1,500만 편취
16	P (여, 53세)	D의 배우자	사기, 고용보험법위반	- '24. 3. D와 공모하여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 후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110만 편취
17	Q (여, 60세)	E의 배우자	사기, 고용보험법위반	- '24. 2.~3. E와 공모하여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 후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110만 편취
18	R (여, 59세)	C의 처형	사기, 고용보험법위반	- '20. 8.~'21. 2. C와 공모하여 근로 사실 없음에도 근로 후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1,080만 편취
19	甲	사회복지법인	판로지원법위반 (양벌규정)	- 피고인의 대표 K, L,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로지원법위반